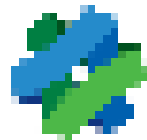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및 사용금지 포장재 개선

2020. 1. 31. ~ 3. 20.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목 차

I.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1.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표시 절차 1
2. 포장재 재질 · 구조 자체평가 사전 준비 2
3. 포장재 재질 · 구조 자체평가 실시 19
4.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
5. 평가받은 포장재 · 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26
6.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결과 표시 28

II.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 중단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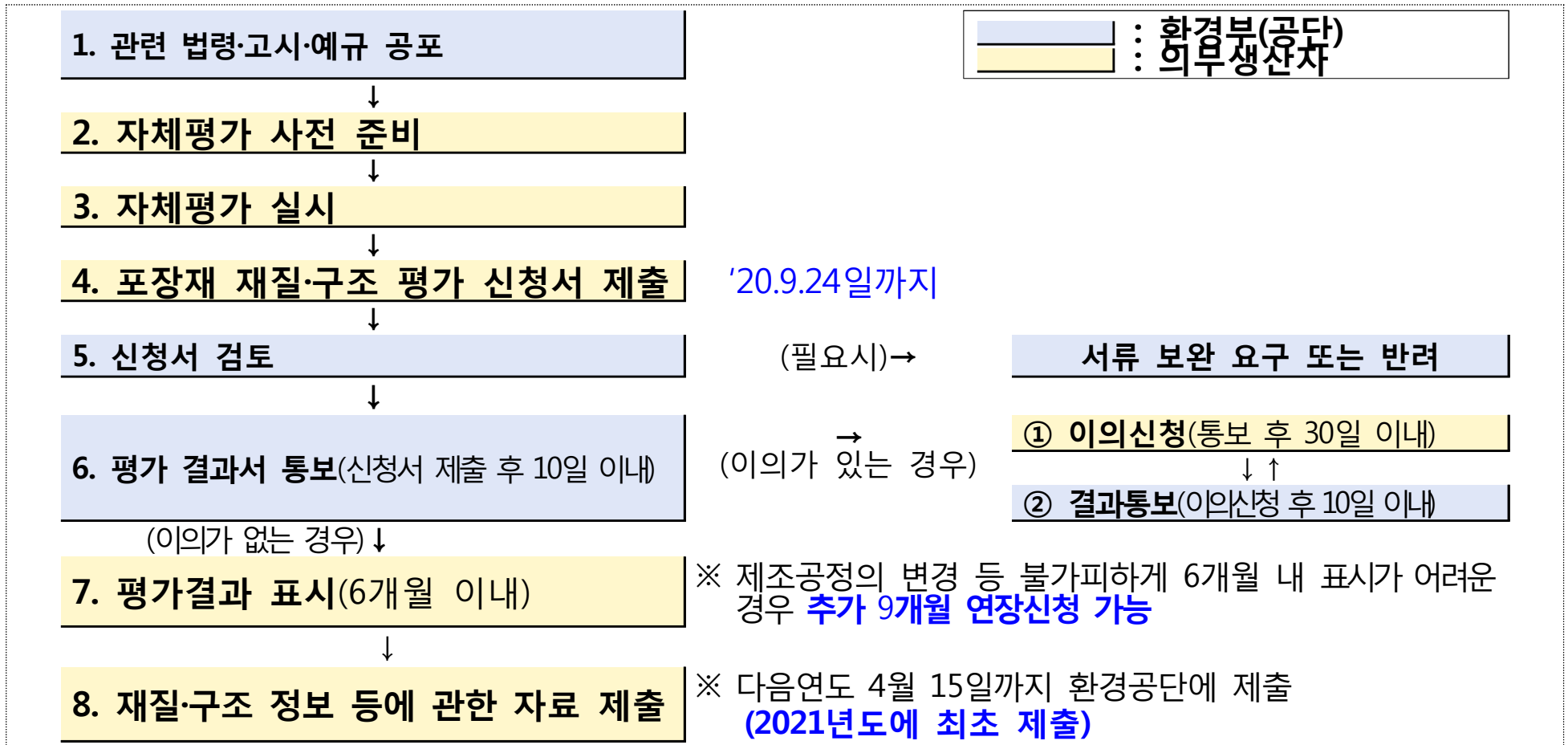
1.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 중단 명령 절차 32
2. 재질 · 구조 개선대상 포장재 34
3. 개선대상 포장재 제외 신청 37
4. 재질 · 구조 개선명령 이행 39

I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1

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표시 절차



2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사전 준비

□ (1단계) EPR 포장재 사용제품 전수 조사(포장재 종류별)

- '18년도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토대로 제품 목록을 작성하되, 누락된 포장재가 없도록 '19년도 신규 출시 제품 목록 추가, 단종 제품 삭제

□ (2단계) 포장재 재질·구조가 동일한 제품 리스트 정리(포장재 종류별)

- 동일한 재질·구조 범위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작성단위 참조

○ 잡자재와 단위제품 구분

- (잡자재) 포장재 몸체에 편리성 부여 및 상품성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포장재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 해당 포장재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병의 손잡이, 캐릭터 마개, 빨대, 제품의 개봉 방지·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한 스티커 등이 해당

- (단위 제품) 주 제품을 위한 참조용 물품으로 주 제품과 별도로 해당 제품 포장재 몸체의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평가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설명서, 규격서, 메모리 카드 등이 해당

○ 재질·구조 평가 비대상

-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구 분	예 시		비 고
수입제품의 한글표시 라벨			
「인삼산업법」 제17조에 의한 검사필증			
꿀 등급제 표시필증			

- 제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과 함께 포장재 안에 담겨 제공되는 습기제거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등

습기제거제	산소흡수제	가스흡수제	알콜취산제
			

□ (3단계)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취합

-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를 통해 내부 정보 파악
 - 공급하는 자(포장용기 제조업체명), 납품확인 날짜,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작성자 등
- 포장용기 제조업체 또는 포장재 부자재 납품업체에 재질·구조 정보 제공 요청
 - ※ 포장재 재질·구조 증명서 양식(붙임 참조)
- 내부 또는 포장용기 관련 업체에서 자료 확보가 곤란한 재질·구조 정보에 대해서는 공인 시험기관에 기기분석 의뢰

○ 포장용기 제조업체(또는 부자재 공급업체)의 재질·구조 정보 제공 요청 양식

000 포장재 재질 · 구조 증명서

공 급 받는자	상 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포장재 재질 · 구조

구분	포장재 재질 · 구조 정보	비고
몸체		
라벨		
마 개 및 잡자재		

※ 두께, 색상값,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여부, 접착제 도포면적 항목의 경우 기기분석 정보(시험일시, 시험자, 분석 장비명 및 분석 결과 사진)는 별지로 작성(예시 참고)

2020년 00월 00일
포장용기 제조업체명 대표이사

직인

[예시]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분석결과서

	포장재명	페트병	재질·구조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사용
시료 정보	포장재 제조업체	(주)A사(시험결과서 발행업체)	평가의무자	(주)B사
	제품명	C 오렌지쥬스	용량 등 규격	500ml
	시험방법	0000 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제7장 페트병 포장재 라벨의 접(점)착제의 면적·양 판정		
시험 정보	시험일시	2019.12.25.	시험장소	(주)A사 실험실
	시험항목	접착제 도포면적	시험자	김 바 림
	시험방법	0000 고시 [별표 2]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제7장 페트병 포장재 라벨의 접(점)착제의 면적·양 판정		
	시료사진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사진		
	시험장비	장비명, 제조사, 장비사진 등 시험장비에 대한 정보 반드시 포함		
	시험결과	접착제 도포면적은 라벨 면적의 0.33%임 ※ 별첨(스캐너에서 측정된 접착제 면적사진 등과 같은 시험결과 raw data, 분석과정 사진 등)		

본 시험결과서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상기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시험책임자 : 홍길동 (인)

업체명 대표이사

직인

※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결과서의 경우, 이 양식을 따르지 않아도 됨

○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구분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비고
종이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 사용시 합성수지 재질정보 추가(PE 또는 PE 외 재질로 구분)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이 포함된 포장재 전체 중량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의 중량 ○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의 포장재 몸체 대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중량 및 합성수지 마개(또는 성형구조물)는 전자 저울을 사용하여 0.01g 단위까지 계량 		
유리병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안료 또는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 (녹색 및 갈색)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65호, '19.12.30) 별표 2제 2장에 따라 측정된 L, a, b 값 	
	표면코팅 또는 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병 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을 하였는지 여부 ○ 표면코팅의 경우, 코팅방법이 Hot코팅, Cold코팅, 플라스틱 코팅에 해당될 경우, 해당코팅 방법 명시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라벨, 합성수지 라벨, 금속혼입 라벨로 구분하여 재질 제시 	

구 분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비고
철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 철과 기타 재질로 구분 ○ (마개 및 잡자재) 철, 알루미늄, 기타 재질로 구분 	
알루미늄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 ①알루미늄 재질, ②알루미늄 이외의 재질이 사용된 복합재질로 구분 ○ (라벨)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인쇄 등 라벨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제공 불필요 ○ (마개 및 잡자재)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이외의 재질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개 및 잡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제공 불필요 	
일반 발포합성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 ①EPS, ②EPP, ③EPE, ④복합재질로 구분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EPS, EPP, EPE, PVC, 기타재질로 구분 	
폴리스틸렌 페이퍼(P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 PS와 복합재질로 구분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PS, PVC, 기타재질로 구분 	
페트병	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안료 또는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 (녹색 및 갈색)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65호, '19.12.30) 별표 2제 2장에 따라 측정된 L, a, b 값 	

구 분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 ①PET, ②PET-G, ③복합재질*로 구분 * 페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페트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 	
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 PVC, 기타 합성수지*, 금속혼입재질, 합성수지 이외 재질로 구분 * PP, PET, PS, EP, EVA 등 단일재질 합성수지명을 기재 ○ (접착제)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와 일반접착제로 구분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또는 시험일시, 방법, 시험분석 담당자,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및 라벨 비중 분리율(%) 산정 결과(0.01g 단위까지 측정) ○ (접착제 도포면적)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또는 시험일시, 방법, 시험 분석 담당자, 3D 스캐너를 활용한 해당부위 스캔 결과 및 3D면적 계산 결과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기타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외 재질로 구분 	
라벨, 마개 및 잡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이 제시되지 않은 합성수지는 비중이 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기기분석 정보(시험일시, 시험자, 분석 장비명 및 분석 결과 사진) 또는 공인 기관시험성적서 ※ 비중이 제시된 재질은 정보제공 불필요. 	

구 분	포장재 재질·구조 정보	비고
비중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 ①PET, ②PET-G, ③PE, ④PP, ⑤PS, ⑥PVC, ⑦기타 합성수지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 재질 무색의 경우, 안료 또는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PET, PET-G, PE, PP, PS, PVC, 기타 단일재질 합성수지, 복합재질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대가 부착된 포장재는 리드 또는 마개의 경우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추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 ①합성수지+합성수지, ②합성수지+합성수지 이외 재질로 구분하되, PVC 사용 여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 사용여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가지 이상의 물질을 하나로 합침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PVC, 기타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분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재질은 PVC와 기타로 구분, - 복합재질은 5종류*로 구분 * ①합성수지+합성수지, ②합성수지+알루미늄을 제외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③알루미늄 두께 20μm 이하, ④알루미늄 두께 20μm 초과, ⑤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 사용 ○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기타 합성수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분 	

○ 인정서류 예시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인정 서류
<p>1. 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라벨·잡자재의 재질 정보 • 합성수지 재질의 라벨 및 잡자재의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증 • 의약품 안전성 테스트 자료 등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 용기·포장에 관한 심의자료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포함 •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확인서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 설명서 • 비중이 제시된 합성수지(붙임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인정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포장기술 개발에 따라 비중이 변경(10이상 → 1미만)된 경우, 비중이 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비중이 제시되지 않은 합성수지 - 비중이 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의 직접인쇄, 표면코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포장재의 사진 및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납품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표준색상표와 해당 포장재 비교 사진 • 무색의 경우, 안료 및 염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포장용기 제조업체 발행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의 절취선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포장재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마개·잡자재의 몸체와 분리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일시, 참여자 별 시험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시험결과서 -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사진 첨부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인정 서류
2. 종이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 첩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종이팩 사진,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3. 유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개의 구조(일체형 또는 분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포장재의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시험 전, 자체 시험 후
4. 페트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칼리성 분리 가능 접착제 사용여부 접(점)착제 도포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시험일시, 방법, 시험분석 담당자 등이 제시된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 미제거(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및 라벨 비중 분리율(%) 산정 결과 - 3D 스캐너를 활용한 해당부위 스캔 및 3D 면적 계산 결과
5.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루미늄 두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재질별 재질·구조 기준	인정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용기 제조 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성적서 • 의무생산자의 포장재 발주규격서 및 납품 확인서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포장재 재질 설명서

○ 증빙서류 인정 원칙

사용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 국문이외 서류 제출시 필수 정보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
필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정보 ▪ 서류의 명칭 및 발행일 ▪ 발행인 정보(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포장재명 및 재질·구조 정보
재질·구조 정보의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용어 사용 ▪ 증빙하고자 하는 재질·구조 정보가 기재된 부분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 제출

○ 불인정 서류 예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서 단일재질 여부를 증빙하면서 주요 재질 외 기타 재질 함유량이 영업비밀로 기재된 경우
- 제품 사진만 제출하여 색상이나 분리용이성 등에 대한 육안판정 결과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페트병’에 대해 평가 신청하면서 증빙서류에는 ‘페트 용기’라고 기재된 경우
- 수출사가 작성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만 첨부한 경우
- 식품 관련 허가서류 중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만 표기된 서류
- 국문 번역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어 서류
- 견적서 또는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 사진
- 해당 재질구조 정보와 관련 없는 시험성적서

예) ‘무색 페트병’임을 증빙하고자 하면서 신청인 기재사항(시료명 또는 제품명 등)에만 ‘무색 페트병’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성적서는 라벨 분리 용이성 여부나 중금속 검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인 경우

○ 주요 합성수지의 비중(출처 : 기구 및 용기포장 이행물질 분석법 해설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합성수지명	비중	합성수지명	비중	합성수지명	비중
ABS	1.02~1.08	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6: 1.13 • PA66: 1.14 • PA12: 1.02 	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LDPE: 0.92 • LDPE: 0.92 • HDPE: 0.95
아크릴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A: 1.17~1.20 • PMMA: 1.19 	PAN	1.18	PEEK	1.32
경화폴리에스터수지	1.12(밀도)	PASF	1.37	PEN	1.34
EP	1.2~1.3	PAR	1.20~1.37	PES	1.37
EVA	0.93~0.96	PB-1	0.86~0.91	PLA	1.152
HBP	1.25	PBSA	1.34	PET	1.41
F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TFE: 2.2 • PCTFE: 2.12 • PVDF: 1.78 	PC	1.2	PF	1.32~1.45
이오노머수지	0.97	PBT	1.32~1.66	PP	0.902~0.907
MABS	1.08	PCT	1.39~1.42	PPE	1.16

합성수지명	비중	합성수지명	비중	합성수지명	비중
MF	1.48~1.50	PI	1.31	PU	1.03~1.5
MS	1.08~1.13	PPS	1.57	PVA	1.27~1.31
PMP	0.83	UF	1.5	PV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5~1.77(비결정) • 1.80~1.97(결정)
POM	1.39	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PS: 1.04~1.05 • HIPS: 1.04 	P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rd : 1.3~1.6 • soft : 1.20~1.70

□ (4단계)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육안 판정 및 자체시험계획 수립

○ 평가 참여자, 평가대상 제품의 포장재, 평가항목, 추진일정 등 포장재 재질·구조에 따라 육안판정 및 자체시험 세부추진계획 수립

- 평가참여자에 대해 포장재 재질·구조 판정 시험방법 사전교육 실시
- 의무생산자가 문서로 평가를 대행 의뢰할 경우, '20. 3월부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서 자체평가 대행(시험성적서 발급) 예정

※ 세부시행계획은 별도 안내 예정

포장재 재질·구조 육안판정 결과서			
포장재명		유리병	재질·구조
일 시		2019.12.25.	장 소
판정정보	판정항목	몸체 색상	
	판정방법	0000 고시 제00조 제00항에 따라 육안판정	
판정결과		판정요원	판정결과
		00팀 김00 (인)	
판정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동영상 등)		※ 색상에 관한 육안판정인 경우 백상지를 배경으로 해당 포장재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분리용이성에 관한 육안판정인 경우 분리 전, 분리 중, 분리 후 사진을 각각 첨부	
위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별표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른 육안 판정 결과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평가책임자 : 홍길동 (인)
A사 대표 (직인)			

○ 육안판정 및 자체시험 항목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2 또는 환경부 발표 가이드라인 참조

3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실시

□ (1단계)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육안 판정 및 자체시험 실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포장재별 육안 판정 및 자체시험 실시

□ (2단계)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평가대상 포장재 재질·구조의 평가결과를 재질·구조 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에 체크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포장재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육안 판정 및 자체시험 결과 확인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등급 판정
 - 구성 항목(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별로 1차 등급 판정 후 구성 항목별 등급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제품 포장재의 최종 등급 확정
- ※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간이평가 시스템 운영 예정(‘20. 3월부터)

4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제출 생략)

□ 신청서 작성 요령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③ 자체 평가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종이팩, ② 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②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③ (자체평가 결과) 해당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등급*을 기재

*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일련 번호	포장재 종류 ①	종합등급 ②	몸체			라벨 ③			마개 및 잡자재 ③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재질구조	판정방법	평가결과
1	페트병	우수	무색몸체	육안판정	우수	종이라벨	육안판정	우수	분리가능	자체시험	우수
2	페트병	어려움	무색몸체	육안판정	우수	접착식 합성수지	기기분석	어려움	분리가능	자체시험	우수

- 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 몸체 재질별로 구분 기재
 - ② 포장재 구성항목별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포장재의 최종 종합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중 선택)을 기재
 - ③ 구성 항목별 포장재 재질·구조, 판정방법 및 평가결과를 기재
- * 라벨 등급이 없거나(종이팩),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합쳐져 있는 경우(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폴리스티렌페이퍼,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라벨 칸을 비워두고 기재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제출 생략)
 - 재질·구조별, 구성 항목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 번호 부여 및 편철 또는 증빙서류 목록과 함께 증빙서류 전체 제출

< 증빙서류 보완 요구 사례 >

- (포장재의 종류) 단일재질(PE)에 관한 서류 제출하고 복합재질 용기류로 신청
 - ☞ 포장재 종류를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로 변경하여 재신청
- (단일재질 용기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적합성(중금속 검출 여부 등)에 관한 성적서 제출
 - ☞ 포장재 재질(PP, PE, PS, PVC 등)에 관한 자료 추가 제출
- (단일재질 필름류) 견적서(PP 재질) 또는 분리배출 표시 포장재 사진 제출
 - ☞ 의무생산자의 발주규격서·납품확인서 또는 포장용기 제조업체(또는 부자재 납품업체)의 포장재 재질에 관한 성적서 추가 제출
- (복합재질 필름류) 식품 관련 허가서류(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만 표기)를 제출
 - ☞ 포장재 전체의 재질(식품과 접촉하는 재질 + 접합된 재질)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제출처 : 환경공단(전산시스템(www.iepr.or.kr))을 통해 제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이의신청서, 표시기한 연기신청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 신청서 작성단위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265호, '19.12.30) 별표 1에서 제시된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제의 재질·구조별로 작성
 - 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가 다른 경우, 각각 몸체의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및 신청
 - * 컵라면(1차 PSP + 2차 필름류), 과자류(1차 트레이 + 2차 필름류) 등
- 다만,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와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의 몸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

구 분	평가대상 재질·구조	평가신청 단위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 단일재질	① PE 재질, ② PP 재질, ③ PS 재질, ④ PE 재질, ⑤ 기타 재질
	- 단일재질 무색 페트	① 단일재질 무색 페트
	- 글리콜변성 PET 수지 재질 혼합 - 유색 PET 재질 - PVC 계열	① PET-G 수지 혼합, ② 유색 PET 재질 ③ PVC 계열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 복합재질 용기, 트레이류	① 합성수지+합성수지, ② 합성수지+합성수지 이외 재질
	-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 PVC 계열	①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② PVC 계열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알루미늄 두께 20 μ m 이하 필름·시트류 - 알루미늄 두께 20 μ m 초과 필름·시트류	① 단일재질 필름·시트류, ② 합성수지+합성수지 ③ 합성수지+알루미늄을 제외한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④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두께 20 μ m 이하) ⑤ 복합재질 필름·시트류(알루미늄 두께 20 μ m 초과)
	-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 PVC 계열	① 합성수지 이외 재질 병합사용 ② PVC 계열

* (병합) 2가지 이상의 물질을 하나로 합침

□ 신청서 제출기한 및 평가결과 표시 시기

- 제품 출시 전 신청서 제출 대상은 민원처리기간 10일을 고려하여 환경공단에 신청서 제출
 - 계도기간('19.12.25~'20.9.24) 중 신규 출시된 제품의 포장재와 기존제품 포장재를 1개의 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가능
 - 유리병, 페트병 우수등급 이상은 '20.9.24까지 평가결과서를 통지받아야 하므로, 처리기한을 고려하여 신청(보완기간 고려하여 가급적 '20.8월말까지는 신청서 제출)

구 분	신청서 제출 기한	평가결과 표시 시기
○ 기존제품	- '20.9.24	- '21.3.25일 이후 제조 제품 - 표시기한 연기 신청시 '21.12.25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
○ 신규제품		
- 계도기간 중 출시 제품	- 기존제품 포장재와 동일	- 기존제품 포장재와 동일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 제품 출시 전	- 최초 제조제품부터 표시 가능
- 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한 포장재	- 제품 출시 전	“
-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 제품 출시 전	“
- 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은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구조 사용 포장재	- 신청서 제출 비대상	- 최초 제조제품

□ 등급평가 계도기간 종료 후 출시된 신규제품의 포장재

○ 기 평가받은 포장재와 재질·구조가 동일한 포장재 사용제품

- (평가) 별도 평가신청 없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에 기입 후 출시 가능
- (표시) 기 평가받은 포장재의 표시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표시 후 출시하여야 하고, 표시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표시 없이 출시 가능하나, 표시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표시 필요

○ 신규 재질·구조 포장재 사용제품

- (평가) 신규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해 환경공단에 평가 접수하여 평가 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
- (표시)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간 등급표시 유효기간 적용

5

평가받은 포장재 · 제품 목록 관리 및 제출

□ 평가받은 포장재·제품 목록 관리

○ 환경공단으로부터 평가 결과서를 받은 이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기록·관리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관리대장					
① 포 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 질 · 구조	③ 평가 결과 서 번호	④ 평가 결과	상품명(규격)	비 고

<작성요령>

① ~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 재질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①종이팩, ② 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PSP), ⑦페트병, ⑧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②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예: 00몸체 00라벨 00마개 포장재)

③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 상단의 평가 결과서 번호를 기재

-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결과서 사후발급 대상은 발급 시까지 빈칸으로 관리

④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 종합등급 기재

-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결과서 사후발급 대상은 발급 시까지 자체평가 종합등급을 기재

□ 제품 목록 제출

- 평가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
-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와 구분하여 별도 제출하되, 계도기간 중 평가를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목록은 2021년 4월 15일까지 제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① 포장재 종류	② 포장재 재질·구조	상품명(규격)	개당 포장재 무게	여간출량(개)	제품/포장재 출고량(kg)	③ 평가 등급	비 고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6항에 따라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 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로 구분하여 작성
- ② 등급기준 별표 1의 포장재별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의 각 종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
- ③ (평가 등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기재된 평가 결과 종합등급 기재
- ④ (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중량용량산출기초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고 서식은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와 공통 사용 가능

6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 표시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분리배출 표시 제외 포장재 중 **PVC·PVDC 재질의 식품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 * 용기·트레이류에 해당되는 블리스터 포장재 또는 PTP 포장재는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에 비해당

□ 표시 생략 가능 대상 포장재

-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PVC·PVDC 재질의 식품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

<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 >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 **PVC·PVDC 재질의 식품포장용 랩 필름은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대상**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평가결과 미표시 가능
 - 멸균팩, 와인병, 위스키병은 별도의 예외 신청 없이 평가결과 미표시 가능

□ 표시 시기

- 평가 결과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연기신청(최대 9개월)*시 최장 15개월간(~'21.12.24) 등급표시 유예 가능
 - * 표시가 의무화된 ‘재활용 어려움’ 등급만 적용(보통 이상은 의무생산자 선택사항으로 연기 신청 비대상)
- 표시 기준일 : 제품 제조일

□ 표시 도안

구 분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도안		

□ 표시 방법 및 위치 등

기 준	방 법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기 타	-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 에만 평가결과 표시 가능

□ 표시 기한 연기신청

○ (신청 대상)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가 곤란한 경우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10일 전에 환경공단에 신청서 제출

○ (연기 가능기간) 최대 9개월(~'21.12.24)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평가 결과서 번호	당초 표시 기한	변경 표시 기한
	① 연기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②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① 인쇄 내용 변경을 위한 동판 교체, 금형설비 교체, 라벨 부착 방식 변경(선라벨 방식 → 후라벨 방식)을 위한 제조공정 변경 등

※ 다수의 기존제품 동판을 교체할 경우 표시기한 연기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② 표시내용 변경 절차 및 소요기간 제시, 완료된 절차와 향후 진행될 절차 구분, 대상 포장재 수 등 연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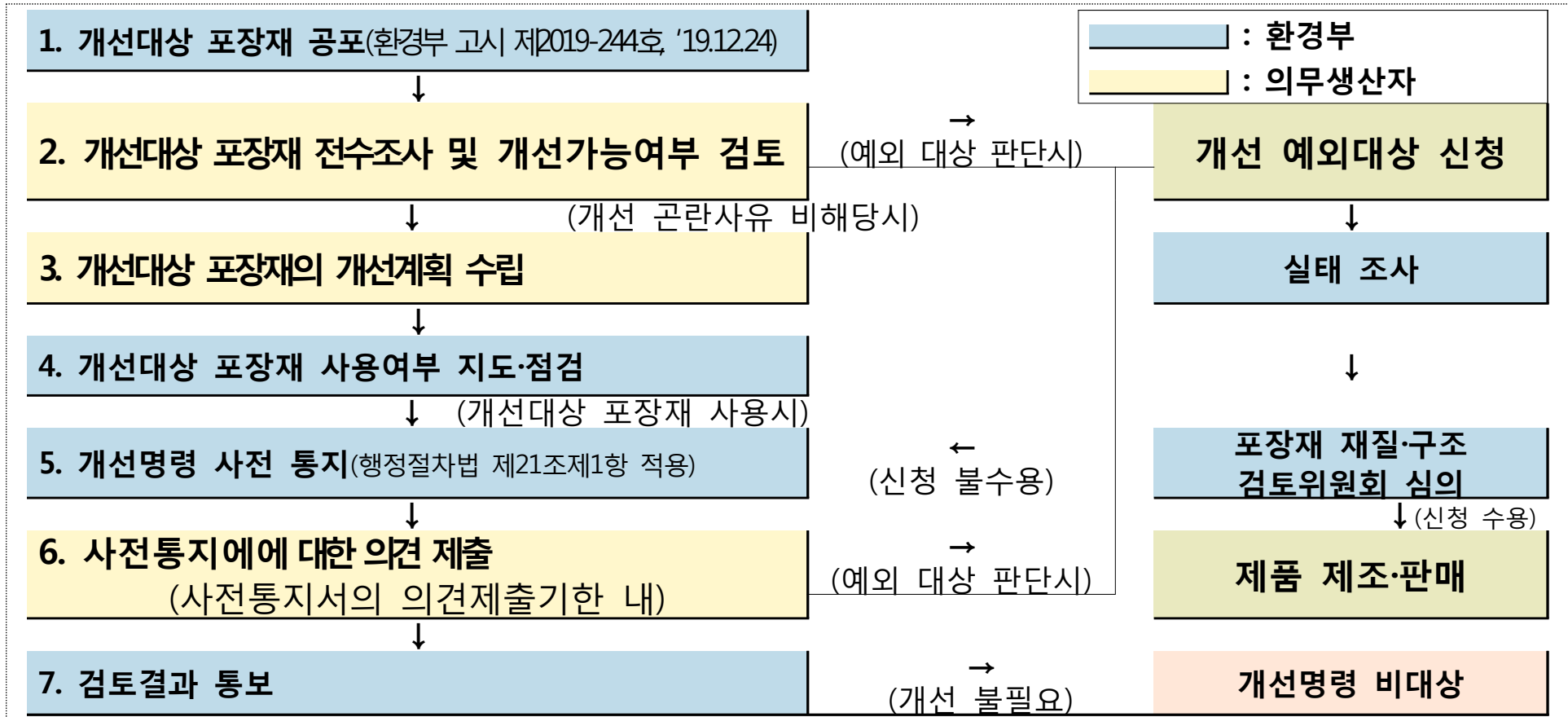
- 제품·포장재 출시 지연, 대상제품 수, 동판 신규 제작(교체) 수, 동판 제작기간, 금형설비 교체 수, 금형설비 제작 및 교체기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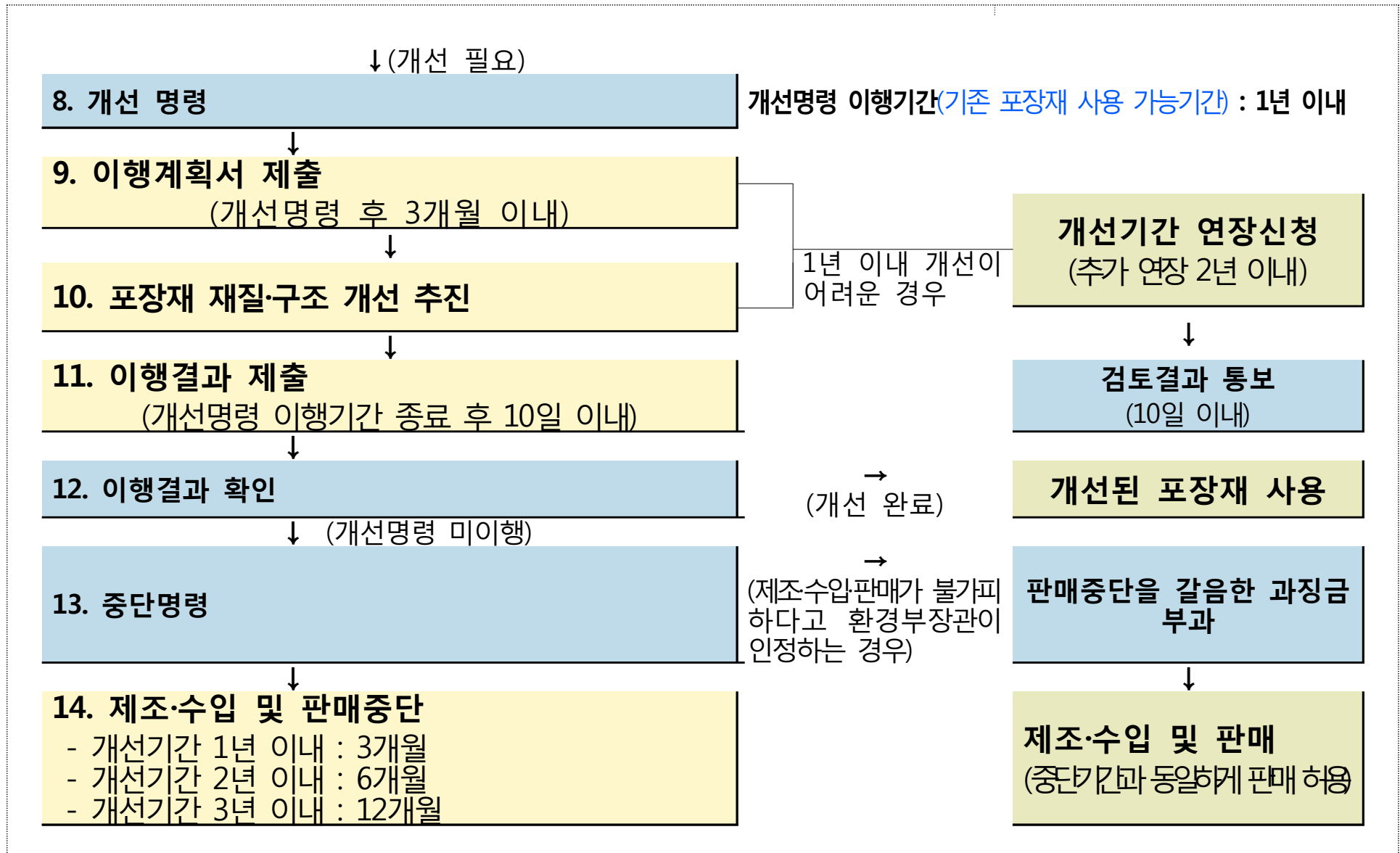
II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 중단 명령

1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 중단 명령 절차





2

재질 · 구조 개선대상 포장재

구분	개선대상(사용금지) 제품·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대상 적용 예외 (사용가능 제품·포장재)
PVC 및 PV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염화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 축·수산물 포장용 랩 필름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샘물 및 음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색 페트병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색 페트병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 개선대상 포장재 및 적용예외 포장재 관련 기준

- (먹는 샘물)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로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
- (음료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9호에 해당되는 제품
- (의약품) 「약사법」 제2조제4호
-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7호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제1호
- (식용유지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7호
- (햄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16-1호
- (소시지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16-2호
- (어육소시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제19-1-4)-(5)
- (축산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포장육 및 양념육류 (단, 양념육류의 경우 가열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한다.)

- (수산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원료 분류 상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 어란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피낭류를 냉동, 염장, 건조, 절단 등에 대해 단순처리한 것 및 외형상 그 종류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모양과 색깔이 손상되지 않은 해조류
- (수축포장) 물품을 1개 또는 여러 개로 합하여 수축필름을 덮고, 이것을 가열 수축시켜 물품을 고정 유지하는 포장방법
- (압박포장) 정제(tablet)나 캡슐의 포장형식으로 손가락 끝으로 세계 눌러 꺼내는 PTP(Press Through Pack) 포장시트



3

개선대상 포장재 제외 신청

□ 신청 대상

- 포장재 재질 변경시 제품의 기능장애 발생, 제품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체 재질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 (먹는 샘물 및 음료)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시 제품의 변질 등 품질관리에 애로가 있거나, 열알칼리 분리가 되지 않는 접착제의 사용금지에 따라 생산설비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경우 등
 - (PVC 재질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등

□ 신청 시기

- (개선명령안 미통지시) 법 시행일 이후 의무생산자가 신청 시기 판단
- (개선명령안 사전통지시)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이내

□ 제출 양식

-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포장재 종류, 제품명, 신청사유 및 입증서류를 문서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
 - (포장재 종류) PVC(또는 PVDC)와 페트병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제품명) 예외 신청대상 제품을 기재하며, 신청대상 제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신청사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제4조제1호마목 또는 제4조제2호에 해당되어 해당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
 - (첨부 서류) 신청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 등 일반 현황 및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첨부서류 예시 >

-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한 후 제품 품질 테스트 결과 및 테스트 조건, 타 재질 포장재료의 교체 곤란 사유 등
- 먹는 샘물 및 음료의 생산설비 교체 규모, 소요기간 및 예산 등
- 회수·재활용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전년도 출고량 규모, 회수재활용 규모, 소요예산, 배출처, 회수·재활용 체계 등

□ 처리 절차

- 의무생산자의 개선대상 제외 신청 → 접수(환경부)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심의 → 환경부장관의 개선대상 제외 인정여부 결정·통지

4 재질·구조 개선명령 이행

□ 이행계획서 제출

- (작성 대상)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제품의 포장재
- (제출 시기) 개선명령 통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제출 양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 서식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제출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행계획	포장재 재질·구조	제품명	① 이행방법	② 이행 완료 예정 일자	비고
<p style="font-size: small;">「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10px;">환경부 장관 귀하</p>					

① 재질 대체(PVC → 페트 등), 포장방법 변경(블리스터 포장 → 종이상자 포장 등) 등을 기재

②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서에 기재된 개선명령 이행기간 범위 내에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이 가능한 날짜를 기재

□ 개선기간 연장 신청

- (대상)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개선명령 이행이 곤란한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 이내
- (제출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제출 양식) 개선기간 연장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의7 서식)

개선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개선명령번호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	변경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사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환경부 장관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연장신청 사유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제조공정 변경 또는 타 법에 의한 포장재의 안전성 테스트 등 불가피하게 개선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

□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

-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 포장재 종류, 재질·구조, 제품명, 이행방법, 이행완료일자 등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 평가결과 표시제도 전문상담센터 운영

최근 자원재활용법 개정법률안이 시행(19. 12. 25.)됨에 따라
회원사의 문의에 신속한 답변과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문 상담센터를 개설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상담번호 : 1588-3798

상담내용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
운영기간 : 2020. 1. 6 (월) ~ 2020. 9. 30 (수)까지

